

[별표] <신설 2009.4.30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참작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과 태 료 금 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	법 제54조제1항제1호	300	400	500
나.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	법 제54조제1항제1호의2	200	300	500
다. 법 제38조에 따른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·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	법 제54조제1항제2호	200	300	500
라.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,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	법 제54조제1항제3호	200	300	500
마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54조제1항제4호	200	300	500
바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54조제1항제5호	200	300	500